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361

발의연월일: 2025. 1. 8.

발 의 자:서영교·김문수·송재봉

정동영・차지호・이정헌

김교흥 · 정태호 · 이춘석

오세희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 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육성·강화라는 한 국교육방송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여 본 래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 인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에 대해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 적 절차를 도입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 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함(안 제9조제2항).
- 나.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반영하여 150명 이상 200명 이내의 홀수로 공개모집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운영, 독립성, 지원 등에 관한 규정과 평가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 및 평가위원회의 후보자 평가 절차와 이사회의 후보자 추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 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이사는 방송 및 교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전원이 동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중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방송미디어 분야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공사가 추천하는 사람 1명, 공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1명,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과 대통령이 정하는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 라.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되, 이사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음(안 제 13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 마. 이사회의 기능에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4조제1항제12호).
- 바. 이사 및 임원은 내·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 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 사. 이사 또는 임원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회의 공개 또는 회의록 공 개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 처벌함(안 제2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을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으로 하고, 같 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서"를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 위원회에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임명제청은 사장의 임기만료 4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한다"를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이사회는 공사의 사장 임명제청을 위하여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평가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반영하여 150명 이상 200명이내의 홀수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는 공개절차를 통한 모집 등 평가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장의 임기만료일 70일 전까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는 이사회가 최종 사장 후보자를 임명제청 의결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 ⑥ 평가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내・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⑦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직무수행을 위하여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⑧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용 등 구체적 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12조의3(평가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2. 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
 -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제12조의4(평가위원회의 평가 등) ① 이사회는 사장의 임기만료일 70일 전까지 평가위원회의 평가 대상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가 평가 대상자로 선정한 사장 후보자는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정책을 발표하고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 ③ 평가위원회는 이사회가 평가 대상자로 선정한 사장 후보자에 대

- 해 정책발표와 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 토론 등을 통해 평가하여야한다.
- ④ 이사회는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사장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후보 자가 제출한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⑤ 평가위원회가 사장 후보자를 평가할 때에는 이사회가 제시한 사장 임명제청 기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공익성에 관한 실천 의지
- 2. 시청자 주권 및 지역성 실현에 대한 공헌도
- 3. 정치적 중립성
- 4. 방송 관련 전문성
- 5. 방송 및 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 ⑥ 평가위위원회는 사장 임기 만료 50일 전까지 이사회에 최종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사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한 후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 따라 이사회가 최종 사장 후보자를 선정할 경우 평가위 원회의 평가 결과가 전체 평가점수 중 70% 이상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⑨ 기타 평가 대상 후보자 선정 기준 및 절차, 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와 방법 및 효력, 최종 후보자 선정 방법에 관련한 사항은 이사

회가 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을 "이사장을 포함한"으로, "9명으로"를 "13명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개인·법인 및 단체의"를 "공사, 임원 및이사를 제외한 개인 및 법인·단체의"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이사는 방송 및 교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대통령이 임 명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이사는 특정 성(性)이 1명 이 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2명
-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전원이 동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중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방송미디어 분야 단체가 추천하 는 사람 2명
- 4. 공사가 추천하는 사람 1명
- 5. 공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6.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7.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 ⑨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 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고,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 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① 제8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있다.

제14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 12.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2(이사 및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이사 및 임원은 임기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내·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이사 및 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이사 및 임원은 이 법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장기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 사람
 - 2. 제13조제9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한 사람
 - 3.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공사의 이사회·임원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른 공사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임원은 이 법 시행 이후 임기 만료시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임원) ① (생 략)	제9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장은 <u>방송통신위원회 위</u>	② 이사회의 제청으로
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	대통령이 임면(任免)
<u>를 받아 임명</u> 한다.	
③ 감사는 <u>방송통신위원회에서</u>	③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
임명한다.	통신위원회에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⑤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임
	명제청은 사장의 임기만료 40
	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사장ㆍ부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	
년으로 <u>한다</u> .	<u>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u>
	<u>임할 수 있다</u>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2조의2(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
	원회의 구성 등) ① 이사회는
	공사의 사장 임명제청을 위하
	여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u>둔다.</u>
	② 평가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반영하여 150명 이

<u>상 200명 이내의 홀수로 구성</u> 한다.

- ③ 이사회는 공개절차를 통한 모집 등 평가위원회 구성의 공 정성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장의 임기만료일 70일 전까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야 하며, 평가위원회는 이사회 가 최종 사장 후보자를 임명제 청 의결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 ⑥ 평가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 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하며 내·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⑦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원 활한 운영과 직무수행을 위하 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 여야 한다.
- ⑧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신 설>

<신 설>

정한다.

- 제12조의3(평가위원회 위원의 결 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위원 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 니한 사람
 - 2. 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
 -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제12조의4(평가위원회의 평가 등)
 ① 이사회는 사장의 임기만료 일 70일 전까지 평가위원회의 평가 대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야 한다.
 - ② 이사회가 평가 대상자로 선 정한 사장 후보자는 평가위원 회에 출석하여 정책을 발표하 고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 ③ 평가위원회는 이사회가 평가 대상자로 선정한 사장 후보자에 대해 정책발표와 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 토론 등을 통해 평가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평가 대상자로 선 정된 사장 후보자의 인적사항

- 과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평 가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⑤ 평가위원회가 사장 후보자를 평가할 때에는 이사회가 제시한 사장 임명제청 기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공 익성에 관한 실천 의지
- 2. 시청자 주권 및 지역성 실현에 대한 공헌도
- 3. 정치적 중립성
- <u>4. 방송 관련 전문성</u>
- 5. 방송 및 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 ⑥ 평가위위원회는 사장 임기 만료 50일 전까지 이사회에 최 종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 다.
- ①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사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한 후 최종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임명제청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 따라 이사회가 최종 사장 후보자를 선정할 경우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

- ② 이사회는 <u>방송통신위원회가</u>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
-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 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 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전 체 평가점수 중 70% 이상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⑨ 기타 평가 대상 후보자 선 정 기준 및 절차, 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와 방법 및 효력, 최 종 후보자 선정 방법에 관련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 이사장을 포함한 -----13명으로-----.
-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③ 이사는 방송 및 교육에 관 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 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 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이사는 특정 성(性)이 1명 이상이 되도 록 하여야 한다.
 - 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 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및 그 밖 의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2

④ ~ ⑦ (생 략)

- ⑧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생략)
- 2.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 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
т	74
	ᅺ
	\sim
	\circ

-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전원이 동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비영리민간 단체 중 방송통신위원회에 등 록되어 있는 방송미디어 분야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 4. 공사가 추천하는 사람 1명
- 5. 공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6.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7.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 ④ ~ (7) (현행과 같음)

8	

- 1. (현행과 같음)
- 2. -----<u>공사, 임</u>원 및 이 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 사를 제외한 개인 및 법인ㆍ 단체의-----

3. (생략)

<신 설>

<u><신</u>설>

⑨ (생략)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 5. (생 략) <신 설> 6. ~ 11. (생 략)

<신 설>

 12. (생 략)

 ② (생 략)

<신 설>

3. (현행과 같음)

⑨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 여야 하고,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① 제8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 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 결한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하 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 사 유가 소멸되거나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사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① (현행 제9항과 같음)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6. ~ 11. (현행과 같음)

12.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 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 항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이사 및 임원의 직무

<신 설>

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이사 및 임원은 임기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내·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이사 및 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이사 및 임원은 이 법의 규 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 지 아니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 사람
- 2. 제13조제9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한 사람
- 3.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사람